



강북구보건소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의료기기법 위반자 시정지시

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7479(2016.06.10)호에 의한 처분의뢰건과 서울전자민원 창구 민원상담(과대광고 신고합니다)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, 의료기기법 위반자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.

가. 대상업소 및 위반내역

업소명 (신고번호)	소재지	대표자	위반사항	위반법규	적용법규(지침)	조치 사항	비고
로드스타	삼양로87 길 27,2층 (수유동)	이규환	수입품목 허가(인증)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광고	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	식약처지침 [2016년 의료기기 제조·유통 관리 기본계획]	시정 지시	서울 민원
파이온 뷰티	삼양로 510, 2층 (수유동)	이현상	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	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	식약처지침 [2016년 의료기기 제조·유통 관리 기본계획]	시정 지시	식약처 이첩

- 첨부 1. 로드스타 광고자료 1부
 2. 파이온뷰티 확인서 1부
 3. 로드스타 확인서(따로붙임) 끝.

주무관

추경미

의약팀장

김문희

의약과장

고연화

보건소장

06/16
이인영

협조자

시행 의약과-11623 () 접수 ()

우 0114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(번동) / <http://www.ehealth.or.kr/>
전화 02-901-7715 / 전송 02-901-7719 / seamom@gangbuk.go.kr / 부분공개